
Policy and Law Report _Vol.108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10.25 ~ 10.31) -

November 1,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정부 공동	• 규제철폐,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적극 해소 정부는 「규제철폐*」를 통해 주요 경제단체로부터 건의된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발표하고 민간·정부가 협력하여 최대한 개선하기로 함 * 규제철폐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챌린지 (Challenge)’로 명명한 것으로서 민간이 제안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정부가 함께 집중 검토하여 최대한 개선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게임 섯다운제도 폐지 → 청소년 자기결정권 존중, 규제 합리성·실효성 확보 ② 공유주택 개념 도입 → 1인 가구 주거 다양화·안정화, 민간형 공유주거 산업 발전 도모 ③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 인간 대상 연구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 기여 ④ 화장품 천연·유기농 표시광고 기준 합리화 → 기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통한 화장품 산업 발전 지속 유도 ⑤ 석유화학업계 저장시설 물질배출규제 개선 → 총탄화수소 저감효과 증가 도모 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기간 합리화 → 현장에 맞는 MSDS 제도의 원활한 추진 ⑦ 판매가격 표시방식 다양화 → 매장 운영업체 부담 감소 및 홍보 효과 증대 기여 ⑧ 신의료기술 의료기기 선진입 확대 →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신의료기술 발전 촉진 도모 ⑨ 화학물질 관리제도 합리화 → 연구개발 활성화, 대기환경 개선, 업계부담 완화 도모	2021-10-28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지난 제224차 대외경제장관회의(‘21.9.27.) 의결을 통해 신설된 경제·기술·안보 등이 연계·통합된 글로벌 현안 이슈에 대해 치밀하게 점검·대응하기 위해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개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美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②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下 우리 기술 육성·보호 전략 ③ CPTPP 가입문제 관련 논의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점검 등이 있음	2021-10-28
	• 「제3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 정책점검회의 /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제3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 상황 점검 (중기부) ②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 방향 (관계부처 합동) ③ 인공지능 활용·확산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과기부) ④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관계부처 합동) 등이 있음	2021-10-29

부처	내용	일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탄소중립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탄소중립 분야 선도 기업들이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산업계 수요를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민간 연구개발 협의체*’ 출범 이후, 탄소중립 관련 사업과 연구개발 과제 수요를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오 * 산업공정혁신,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신재생에너지 분과 등으로 구성, 산업 내 주요 대·중·소 선도기업이 참여 탄소중립 투자 방향 및 기술확보 방안,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규제 개선, 정부·민간 간의 협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신공정 개발, 값싼 수소의 생산 및 공급 해결책(솔루션) ②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 시험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 여러 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연구개발의 타분야 확대 (석탄화력 발전→ 액화천연가스 발전) 등 분과별 기술 수요에 대해 논의가 이어짐	2021-10-29
산업통상 자원부	• 신남방 주요 국가들과 다자·양자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 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선언식과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개최함 2017년 신남방정책 선언 이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0.11월 서명), 인도네시아('20.12월 서명) 등에 이어 필리핀, 캄보디아 등 신남방 주요 국가들과의 다자·양자 FTA 네트워크를 완성함 한-필리핀 FTA 의의 및 주요 내용으로는 ① 높은 수준의 개방 합의 - 한국은 94.8%, 필리핀은 96.5% 관세 철폐 ② 필리핀 내 승용차·친환경차 등 품목, 경쟁국보다 우위 확보 ③ 농산물은 기존 FTA 수준에서 추가개방 최소화 (자유화율 72.2%) ④ 백신·기후변화(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포함)·문화 등 분야 포함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플랫폼 구축 한-캄보디아 FTA 정식 서명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메콩국가와 첫번째 FTA로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 ② 한-아세안 FTA/RCEP 대비 화물자동차·섬유·기계·딸기·배 등 추가 개선 ③ 최빈개도국과 FTA로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토대 마련 등이 있음	2021-10-26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 출범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 수요자 중심의 표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뿐 아니라 산업계가 대거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을 설립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함 우리 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술을 국가·국제표준으로 신속히 제안하고, 국제표준화에 있어서도 국내 산업 실정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인공지능 산업 성장의 근간이 되는 양질의 데이터 축적방법 및 포맷 ②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기준과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③ 인공지능 적용 산업별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표준화 추진 등이 있음	2021-10-28
환경부	•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환경부는 중소기업 규제 개선을 위한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및 2050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환경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함 이날 참석한 “중소·중견 기업계 8개 협회·단체장*”들은 다음과 같은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 개선을 건의함 ① 소량의 안료만 첨가한 플라스틱 제조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상 제외 ②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및 요건 완화 ③ 유해화학물질 등급별 관리기준 차등화(완화) ④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러한 건의에 환경부는 ①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은 일부 시험자료 제출 생략하는 등 대안 모색 ② 기업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지형도, 위치도 등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개선	2021-10-22

부처	내용	일시
	③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개별 진행되는 안전교육도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교육은 이수한 것으로 인정 검토 예정 ④ 내년부터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의 다변화와 함께 관련 예산 및 보조율 확대 추진 계획 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2025년~)받게 되는 소규모 염색사업장에 대해 통합허가 이행 상담(컨설팅) 비용 등 지원 예정	
금융 위원회	• 은행장, 유관기관 등 은행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은행장, 유관기관 등 은행업계와의 간담회를 가지고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은행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 조성 ②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위해 신탁업·투자자문업, 플랫폼 사업 등 은행의 경영·부수업무를 확대 검토 ③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금융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과 빅테크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④ 은행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신사업투자 활성화, 플랫폼 경쟁력 확보, 비즈니스 모델 다변화 등이 필요함으로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정비도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지원 등이 있음	2021-10-28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21.10.26. 시행) 전국의 녹색환경지원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8035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 이에 따라,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대상, 환경책임투자 지원 사업의 내용,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의 지정 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환경책임투자: 금융기관이 환경적 요소를 투자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	2021-10-26
국토교통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2021.12.25. 시행 예정)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설치해야 하는 후방보행자 안전장치의 기준 중 자동차 후방영상장치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감지(感知)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한편, 자동차를 후진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후방에 있는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021-10-25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021.10.28. 시행)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40호, 2021. 7. 27. 공포, 10. 28. 시행)됨 이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의 유형별 감리원 배치 인원과 그 자격 등을 정하는 한편,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1-10-2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 (제22조제2항제2호가목 신설) - 시장·군수·구청장 등 건축물 해체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감리하도록 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특수구조 건축물,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등을 추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함 ②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제시 (제23조의2 신설) - 감리원 배치인원을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해체공사에는 1명 이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에는 2명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정함 - 배치되는 감리원의 자격을 건축사 또는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등으로 정하되, 해체공사의 과정 중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특정 시점에서는 건축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특급기술인인 사람이 감리하도록 함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20원으로 인하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적용 ※ 의견제시기간 : 10/29(금)~11/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로 제출	2021-10-29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529원에서 423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을 375원에서 300원으로 인하여 2022년 4월 30일까지 적용 ※ 의견제시기간 : 10/29(금)~11/1(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로 제출	2021-10-2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가표준액의 변경, 산정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를 두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민간건설사업자는 대도시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여 세제 지원을 하는 한편, 주민세 개인분의 과세 제외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의 직계비속을 추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단계적 인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법률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 2022. 1. 1.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증가되는 지방소비세액에 대한 구체적인 안분방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할 때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 마련 (안 제4조제3항) ② 시가표준액의 변경, 산정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신설 (안 제4조의4) ③ 1톤 이하 소형 LPG 저장조는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안 제5조제1항제2호) ④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 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상의 명확화 (안 제11조의2) ⑤ 부동산 등의 무상 취득 시 적용하는 시가인정액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 (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제19조, 제20조) ⑥ 취득세가 과세되는 재건축 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에서 차감하는 재건축 미동의자에 대한 추가매입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방식을 명확히 규정 (안 제17조의2) ⑦ 점유로 인한 취득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명확히 규정 (안 제20조제14항) 등이 있음 ※ 의견제시기간 : 10/29(금)~12/8(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로 제출	2021-10-2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중소벤처 기업부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58호, 2021.7.27. 제정, 2022.1.28.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본지침 내용과 시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을 정함 ② 지역중소기업 정책·실무·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련한 주요 정책과 계획, 이행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정책·실무·지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③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④ 지역중소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지정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스마트 혁신지구 지정요건과 해제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⑤ 특별지원지역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 (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준·절차·해제에 관한 사항과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지원센터 설치기관 및 소관업무를 정함 ⑥ 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안 제18조부터 제23조 및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명시하고, 공장설립, 직업훈련,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등 지역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⑦ 실태조사,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전담관리기관 지정 (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 의견제시기간 : 10/26(화)~12/6(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정책과)로 제출	2021- 10-26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비자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및 주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법원의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의견의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소비자 단체소송의 요건 및 주체 정비 (안 제70조) - 종전에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계속되거나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그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소송의 제기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에 설립 목적이나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함 ② 소비자 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 제도 폐지 (현행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을 허가하도록 하는 소송허가 제도를 폐지하여 소비자 단체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③ 실태조사 근거 마련 (안 제81조의2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소비자단체·사업자·사업자단체와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021-10-2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의원 등 11인)」 가상자산 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였으나, 금융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장 관리 중심의 소극적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음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대적 현실 속에서 가상자산 관련 산업을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 건전한 가상자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등 발전방안을 규정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한 가상자산산업,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정의함 (안 제2조) ② 가상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 통합관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③ 가상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가상자산 관련 전문인력 육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17조 및 제18조) ④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미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며,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함 (안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 ⑤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이해상충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함 (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⑥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행위,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 (안 제33조부터 제41조까지)	2021-10-2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⑦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가상자산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단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2조 및 제43조) ⑧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조사 권한, 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 (안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⑨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1조) ⑩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2021-10-28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사고가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사고인지 여부를 이용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적 영역에서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고, 정보통신기술의 전문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해당 사고가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사고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금융위원회가 긴급조치 등 대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상이 되는 사고를 ‘침해사고(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로 한정하고 있으나, 사고의 규모가 크거나 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사고의 경우를 침해사고의 범위에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의무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부과하고 금융위원회가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는 사고의 유형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개인정보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발생한 사고를 추가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해당 사고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로 발생한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도록 하며, 사고의 규모 및 사고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를 침해사고에 포함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통지하고 금융위원회가 사고의 원인조사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9조 및 제21조의5제1항, 안 제21조의6제1항제4호 신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이 토지, 건물 또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단기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하는 규정(「소득세법」 제104조)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법인의 단기매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없어 법인을 통한 단기투기가 성행하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함으로써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임 (안 제55조의2제1항제5호 및 제7항 신설)	2021-10-22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종전 15년간의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하는 제도임 그러나 이와 같이 공제한도를 규정할 경우 담세력이 없음에도 과세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세무행정도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음.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아도 영국과 독일은 공제한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은 공제한도는 두고 있으나 공제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음. 또한 현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그동안 손해가 누적된 기업들의 정상화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삭제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여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공제한도 제한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1항)	2021-10-2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내국법인이나 연결법인의 결손금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될 당시에는 결손금 공제한도가 없었으나 세수확보 등을 이유로 2016년도부터 각사업연도 소득의 80%로 결손금에 대한 공제한도를 처음 적용한 이후 현행의 60%까지 축소되어 온 것임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주요 국가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나 공제기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내 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조세지원책이 필요해진 만큼 현행의 결손금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나마 다시 8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 상향 적용토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세지원을 하고자 함 (안 제13조제1항 및 제76조의13제1항)	2021- 10-28
행정안전 위원회	•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정부)」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료 감면 등 공유재산특례가 개별법에서 과다하게 규정되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유재산특례 규정의 기본 원칙, 신설 공유재산특례의 심사와 기존 공유재산특례의 점검·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공유재산특례의 정의 (안 제2조) – ‘공유재산특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공유재산에의 영구시설물 축조, 공유재산의 양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정의함 ② 공유재산특례의 기본 원칙 (안 제5조) – 법률에 공유재산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특례 목적의 공익성, 요건의 명확성 및 존속기간의 적절성 등 공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2021- 10-28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③ 공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 (안 제6조) - 공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간을 법률에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그 존속기간은 공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영구시설물 축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④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안 제7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특례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함 ⑤ 공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 (안 제8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특례의 적정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하도록 하고, 운영 방식 또는 절차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공유재산특례의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유재산특례의 폐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⑥ 공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9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특례 운영 방향과 운영 실적 등이 포함된 공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유치 등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발행규모, 행사가격 등의 요건을 일반기업 또는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비해 유리하게 운영 중임 그런데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일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규정하는 「상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벤처기업이 현행법의 유리한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발행규모, 행사가격, 발행절차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별 발행 취지에 맞도록 행사요건을 정비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동법이 「상법」에 우선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2021-10-26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을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임직원과 임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발행 가능규모, 행사가격 등에 차등을 두는 내용이 포함된 조항을 신설함 (안 제16조의3) ② 주식매수선택권 정관 규정사항,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등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의4) ③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지에 맞도록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위한 요건을 정함 (안 제16조의5) ④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및 철회시 중기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은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함 (안 제16조의6)	
보건복지위원회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1인)」 최근 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시장에서 식품 등 소비 수요와 판매 공급이 확대되고, 제품 표시·광고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공되어 온라인에서 게시된 제품 정보를 통한 구매가 일반화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지속되어 국민 안전과 건강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영업자 중심의 오프라인 규제사항으로서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의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 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의 식품 등 부당 표시·광고에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민 안전,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등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 확립을 위해,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방대한 온라인 시장의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보통신 서비스단체 등의 자율규제 관리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유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021-10-2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식품등의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 사항의 수정 또는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의2 신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의3 신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게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의4 신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현황 조사,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의5 신설)	
환경노동 위원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해당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간이측정방법에 의한 사후적발 만으로는 과대포장 또는 이중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등은 의무적으로 포장의 겉면에 포장방법 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인지하고 선택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환경위해물품 구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9조제4항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2 신설)	2021-10-28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11/2(화)	현안입법 알리기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의무규정 도입	온라인
	11/4(목)	제22차「AI와 국회포럼」개최 - 메타버스로 소통하자	온라인
	11/5(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62호 발간	
	11/5(금)	「헌재결정과 법제」 제14호 발간	
국회도서관	11/2(화) 10:00	「의회정보자문회의」개최 - AI 시대, 의회정보서비스 발전 방안	ZOOM
	11/4(목) 15:00	제22차「AI와 국회포럼」개최 - 메타버스로 소통하자:문화·금융·디지털휴먼	ZOOM
예산정책처	주중	「2021~2030 NABO 중기재정전망」 발간 -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제도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10년 동안의 재정총량에 대한 전망을 제시	
입법조사처	11/1(월)	「NARS 현안분석」 제216호 발간 -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11/2(화)	「NARS 현안분석」 제217호 발간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별첨1] 제391회 국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특별위	11/2(화) 10:00	인사청문회	감사원장(최재해) 임명동의안 심사
예결위	11/1(월) 14:00	전체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특별위	11/3(수) 10:00	전체회의	예산안 등 상정
	11/4(목) 10:00	예결산소위	예산안 등 심사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11/1(월) 15:00	새로운 기능과 조직체계 탐색 새로운 기능의 정부 기능 개편방식에 대한 논의들	김승수 의원실	이룸센터 (ZOOM)
11/2(화) 14:00	국회물포럼 제15차 대토론회 - 22년 물예산과 통합물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변재일 의원실, (사)국회물포럼	서울대학교 (ZOOM)
11/2(화) 15:00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 - 미중 패권경쟁과 한미동맹의 미래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 박진 의원실 외	공군호텔 세미나실
11/3(수) 10:00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인력·예산· 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민병덕, 황운하 의원실 외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 • 박희훈 소속변호사 | T. 02-316-7917 | E. hhpark@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